

피해자의 권리 안내서

알래스카주 법무부,
형사국(Criminal Division)



목차

개요.....	1
알래스카주 헌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1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권리	1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	1
알래스카주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1
성폭력 및 가정 내 폭력 범죄	2
보호 명령에 대해	2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	3
범죄 피해자 및 보석 심리.....	3
재판 및 기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3
피고의 정신과 수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4
형 선고 시 피해자의 권리.....	4
배상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5
형 선고 후 피해자의 권리.....	5
형 선고 후 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5
피해자의 권리 및 사면	6
법 집행 기록 열람	6
청소년 재판 사건에서의 피해자 권리	6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7
지역별 위기 상담 센터 안내	9

개요

본 문서는 알래스카주 헌법 및 주 법령에 따른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이다. 아래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소 제기 시부터 형사 재판 과정에 해당하는 재판, 선고 및 유죄 판결 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알래스카주 헌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알래스카주 헌법 제 I 조 24항은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다음 항목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존중하는 태도로 품위 있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체포 또는 소환 후 재판 종료나 사건의 최종 처분 시까지 법원에서 적절한 보석 또는 석방 조건을 결정하는 동안, 그리고,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기다리면서 풀려난 상황에도 피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기소자측과의 면담이 허용되어야 한다.
- 체포 후 사건이 시기적절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 피고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형사 또는 청소년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소송 절차에 참석이 허용되어야 한다.
-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권리

처음에 범죄가 저질러진 후, 법률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상의 필요와 관련된 다수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AS 12.61.010(a)(7); AS 18.65.515(a)(3)]
- 안전 주택 또는 보호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AS 18.65.515(a)(1)]
- 72시간 가정 내 폭력 보호 명령을 요청할 권리[AS 18.66.110; AS 18.66.100(c)(1) - (5), (8) - (12), (16)]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

알래스카주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기관을 설립했다.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관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들이 알래스카주 형사 사법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알래스카주 헌법 제 1 조 24 항 및 다양한 주 법령에 따라 그들에게 보장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 집행 기관 및 기소자측과 최초 접촉 시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AS 12.61.010(a)(15)].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문의처: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The Alaska Office of Victims' Rights)
1007 West 3rd Avenue, Suite 205
Anchorage, Alaska 99501-1936
(907) 754-3460 대표 전화
1-844-754-3460 무료 전화(알래스카주)
(907) 754-3469 팩스
www.ovr.akleg.gov
이메일: officeofvictimsrights@akleg.gov

알래스카주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알래스카주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VCCB)에서는 알래스카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한 정보 문의처:

알래스카주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P.O. Box 110230
Juneau, Alaska 99811-0230
1-800-764-3040 무료 전화(전국)
(907) 465-3040 수신자 부담 대표 전화
(907) 465-2379 팩스
www.doa.alaska.gov/vccb/
이메일: doa.vccb@alaska.gov

- 피고의 죄상 인부 절차 시, 혹은 보석 조건이 결정될 때 치안관사나 판사 앞에 피고의 최초 출두 시 통보를 받고 출석할 권리 [AS 12.30.010; AS 12.61.010(a)].

성폭력 및 가정 내 폭력 범죄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 내에는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 협의회(Council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가 개설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과 조정, 위기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AS 18.66.010].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 변호사 간에는 기밀로 유지되는 의사 교환이 특별히 허가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AS 18.66.200 - .250; AS 12.45.049].

성폭력 범죄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성폭행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AS 18.68.040].

성폭행 사건에서 범행에 성기 삽입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혈액 검사를 받게 하여 HIV 양성 여부 또는 그 밖의 다른 성병(ST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권리는 한 개인이 체포되고 치안관사 또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 기소장, 진술 또는 정보에 의해 해당 범죄로 기소된 후 7일 간 존재한다[AS 18.15.300(f)(1); AS 18.15.300 - .310]. 피고의 혈액 검사에서 HIV 또는 기타 STD에 노출 또는 감염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무료 상담, 검사, 적절한 의료 시설 소개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AS 18.15.310(h)].

가정 내 폭력 범죄

가정 내 폭력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보안관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관은 더 이상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 시설이나 안전 주택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AS 18.65.515(a)(1)].

보안관들의 경우, 피해자 소유의 의복, 약물 및 법률 서류와 같은 필수 물품들을 옮길 수 있다. 또한, 보안관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서비스에 연락하거나 지역 의료 시설로 이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안관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 명령에 대해

가정 내 폭력 피해자에게는 보호 명령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보호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학대자가 가정 내 폭력 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
- 학대자가 스토킹하거나 괴롭히거나 연락하지 못 하게 한다.
- 학대자를 거주지에서 내보낸다.
- 학대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학교, 근무처에서 떨어져 있도록 명령한다.
- 학대자가 피해자의 차량 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학대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화기를 넘겨주도록 지시한다.
- 거주지, 차량의 안전한 점유를 보장하거나 개인적인 물품들을 거주지에서 옮기기 위해 거주지까지 피해자와 동행해 주도록 보안관에게 요청한다.
- 미성년 자녀의 임신 양육권을 신청인에게 부여한다.
- 차량 및 기타 필수적인 개인 물품들의 소유 및 사용을 승인한다.
- 학대자가 규제 약품(마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한다.
- 학대자에게 피해자 본인 또는 자녀를 부양할 별개의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학대자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한다.
- 병원비를 포함, 가정 내 폭력이 원인이 된 지출에 대해 학대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한다.
- 학대 행위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학대자에게 명령한다[AS 18.65.515(a)(1); AS 18.65.520].

가정 내 폭력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사법권에서 발행되고 알래스카주 내

재판구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보호 명령 증명서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주의 법원에 의해 발행된 보호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AS 18.66.100; AS 18.66.140].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

범죄 피해자는 모든 알래스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알래스카주 헌법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제 I조 22항]. 피고가 납치 또는 성범죄(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성기 노출 또는 납치 포함)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는 기록이 아니며 법원 문서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 대신, 이니셜로 피해자를 식별한다. 피해자의 거주지 및 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또한 기밀 사항에 해당한다[AS 12.61.140; AS 12.61.110; AS 12.61.120(a); AS 12.61.130(a)].

피고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나 증인과 면담 시, 자신들의 신분과 피고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AS 12.61.120(c)(1)].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고측 변호사와 면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측 변호사와의 면담을 허용한 경우, 피해자는 지방 검사 또는 다른 개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고측 변호사나 피고를 대항하는 다른 개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AS 12.61.125(a)(1)].

피해자가 피고측 변호사와의 면담을 허용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동의 없이 면담 내용이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피해자는 대화 기록(녹음)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으며 속행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신청서는 기밀로 취급된다[AS 18.67.030(c)].

범죄 피해자 및 보석 심리

범죄로 체포 및 기소된 후 재판까지,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법원에 보석 방면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보석 심리에 출두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는 거리, 장애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화를 통한 참여를 희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 참여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리가 있기 전에 검찰청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한다.

보석 심리는 사건의 정황을 기반으로 하며, 판사가 보석 방면 요청을 수락 또는 기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피해자가 보석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보석 심리가 열리기 전에 검찰청에 연락해야 한다.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방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스토킹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방면되기 전에 피해자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 내 폭력 범죄의 피고가 구류에서 풀려난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고의 방면 조건 사본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알래스카주 헌법 제 1조 24항; AS 12.61.010(a)(2); AS 12.30.027; AS 12.30.027(a); AS 12.30.025; AS 12.30.029(a); AS 12.30.027(d)(1) 및 (2)].

피해자가 증언하도록 소환된 심리 또는 법원 소송 절차가 취소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집행 및 기소 활동에 협력하는 피해자의 경우, 이용 가능한 보호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협력과 관련된 손해 또는 상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의 유형에는 보호 명령, 개인 소지품 획득 지원, 안전 가옥이나 보호 시설로의 이동 및 의학적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알래스카주 교정국(Alaska 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연락을 취하여 수감 정보 피해자 통보 시스템(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VINE)에 등록할 수 있다. VINE은 알래스카주 교정국에서 유지관리하는 무료, 익명으로 처리되는 전산화 통보 시스템으로, 피고가 이송, 석방되거나 구류 상태에서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 및 기타 개인들에게 통보한다. VINE 시스템에 대한 문의 번호는 1-800-247-9763이며, 웹사이트는 www.vinelink.com이다[AS 12.30.010(a)(3); AS 12.61.010(a)(4); AS 12.61.050].

재판 및 기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피고의 기소 및 형 선고에 있어서 소송 절차 중 피고에게 참석할 권리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도 참석할 권리가 있다. 범죄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거나 가정 내 폭력이 연루된 범죄인 경우, 요청이 있으면, 지방 검사는 피고의 재판 전에 피해자들과 그들의 증언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통보를 받고 재판에 참석할 권리 외에도, 피해자는 재판에서 현 상황에 대한 모두진술의 한 부분으로 배심원단에게 지방 검사에 의해 소개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반대 심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평정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정직하고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 협력 단체들 또는 지지자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들이 도움이 된다. 피해자의 정신과적 상태 또는 심리적 상태가 기소된 범죄의 한 요소가 아닌 한, 또는, 피해자들이 기소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계속되는 심리적 상태나 정신과적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정신과적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관련 재판에 의한 구체적인 판결 없이, 피해자의 지나간 성적 행동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몇 가지 예외가 있으나,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 변호사 간에 기밀로 유지되는 의사 교환이 특별히 허가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AS 18.66.200 - .250; AS 12.45.049].

피해자의 고용주의 경우, 피해자가 증언 제공을 목적으로 소환되거나 지방검사에 의해 법원 소송 절차에 출석을 요청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를 문책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AS 12.61.010; AS 12.61.015; AS 12.61.017; AS 12.45.042; AS 12.45.045(a); AS 47.12.110(b)].

형사 사건의 상황 또는 다음 재판일을 확인하려면, 검찰청의 피해자/증인측 법률 보조원(victim/witness paralegal)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알래스카주 법원 시스템의 CourtView 웹사이트(records.courts.alaska.gov)에서도 형사 사건의 상황 또는 다음 재판일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의 정신과 수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알래스카주 법령 표제 12, 제47장에서는 정신 이상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고가 보건복지부 장관(commissioner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의 관리 하에 있게 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의 상태에 대한 임박한 변화 또는 실제적인 변화를 통보 받을 자격이 있다. 제시된 상태 변화에 대해, 피해자는 재판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출두할 권리가 있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피고가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범죄 피해자는 특별 의료 가석방과 관련한 심리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된다 [AS 12.47.090(a)(1)-(5), (b) 및 (e); AS 12.61.010(a)(11) 및 (12)].

형 선고 시 피해자의 권리

-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증언 또는 미출두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형량을 낮출 수 없다 [AS 12.55.151].
- 중범죄자의 경우, 보호 관찰관의 판결 전 보고서(PSR)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재정적, 정서적, 의학적 영향에 대해 보고하는 피해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이 포함되며, 피해자 배상의 필요성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들도 포함된다 [AS 12.55.022; AS 12.61.010(a)(9)].
- 경범죄 사건의 경우, 판결 전 보고서(PSR)는 작성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판결 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 [AS 12.61.010(a)(9)]. 피해자는 본인이 진술을 원한다는 것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모든 피해자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적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진술서는 형량 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양형을 위한 심리(sentencing hearing) 시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한 경우,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OVR) 소속의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심리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을 수행할 수 있다 [AS 12.55.023(b); AS 24.65.110(b)].
-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정서적, 의학적 영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게 된다 [AS 12.55.025(a)(5)(A)-(B)].
-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기소자측과 협의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제 I조 24항].
- 중죄 또는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재판 전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피해자와 협의해야 한다 [AS 12.61.015(a)(1)].
-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제안된 유죄 협상안(plea agreements)에 대해 피해자와 협의해야 한다 [AS 12.61.015(a)(4)].
-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판결 전 보고서를 준비한 해당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S 12.61.015(a)(2)(C)].
- 요청이 있는 경우, 형 선고 전에 검사는 판결 전 보고서 일부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준비한 범법 행위 요약, 범법 행위에 대한 피고의 견해, 전체 진술과 피해자 진술 요약 및 교정국(DOC)의 형 권고안 등이 요약되어 있다 [AS 12.55.023(a)(1)-(4)].

배상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공공 정책상, 법은 피해자들이 받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해 범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즉, 피해자들에게는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검찰청의 피해자/증인측 법률 보조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범죄 배상은 실질적인 금전상의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 [AS 12.55.045(a)]. 판사의 범죄 배상 명령은 피고의 보호 관찰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하는 민사상 판결 결과로 확정된 채무가 된다[AS 12.55.045(l)]. www.courts.alaska.gov/trialcourts/restitution.htm

알래스카주의 피해자 권리 법령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VCCB)로부터 AS 18.67에 의거한 보상을 신청 및 수령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VCCB는 “최종 지급인(payer of last resort)”에 해당하므로, 다른 출처(보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실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AS 18.67.090]. VCCB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시기에 맞게 신청하고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배상 명령은 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민사 책임도 제한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배상 청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피해자는 민사 소송 추진을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는 알래스카주 변호사 협회(Alaska State Bar Association)로부터 소개 받을 수 있다[AS 12.55.045(a)(1); AS 12.61.010(a)(5); AS 18.67.175; AS 12.55.045(b)].

형 선고 후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된다. 중죄 또는 가정 내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요청 시, 사건이 최종 처분(형 선고)되었음을 지방 검사로부터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AS 12.61.015(a)(3)]. 모든 피해자들은 항소가 제기된 경우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AS 12.61.010(a)(2)].

피고 또는 검사는 판사에게 요청하여 판결을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three-judge panel)에게로 넘길 수 있다[AS 12.55.175].

피해자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의 소송 절차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가 구금 중 도주하거나 일시 출소, 조기 출소 또는 그 밖의 다른 석방 형태로 풀려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통보를 받게 된다. 가정 내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피고가 도주하면 자동으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의 유죄 판결 후 요청 시, 피해자는 피고의 전체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에 현재 주소가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AS 33.30.013(a)-(c); AS 12.61.015(a)(3), AS 12.61.010(a)(2), AS 33.30.013; AS 12.61.010(a)(10)].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의 경우, 보호 관찰 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으나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보호 관찰 규정을 위반한 피고는 보호 관찰 철회 청원(Petition to Revoke Probation)에 의해 법정에 다시 서야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법(Victim Rights Act)에 따라, 피해자는 석방 조건 또는 형 선고(보호 관찰 절차에서는 “처분(disposition)”이라고 함)와 관련이 있는 모든 보호관찰 철회 절차에서 발언할 기회 및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 선고 후 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의 형량을 조정하거나 낮추도록 법원에 청원할 자격이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고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에 주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교정국에서는 수감자의 요청에 대한 통보서를 제공하며 형량을 조정하거나 낮추기 위한 발의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다음 항목들을 통지한다.

- 이 조항에 따른 권리
- 소견서 접수 기한
- 심리 일자 및 법원 주소.

피해자들은 주소 이전 시 교정국에 알려,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교정국에서는 자유재량에 의한 가석방을 고려 또는 검토하기 위한 심리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피해자는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에 자신의 주소

정보를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가석방 위원회에 서신을 보내거나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보호 관찰을 승인하기 전에, 법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보호책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피고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필요한 다른 보호 관찰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호 관찰 조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형 선고 전에 미리 검찰청에 문의해야 한다 [AS 12.55.088(d) (e) 및 (h); AS 12.61.010(a); AS 33.16.120; AS 12.55.101(a)].

피해자의 권리 및 사면

주지사가 사면, 감형 등의 관대한 처분을 승인하기 최소 120일 전에 사면(특사 포함) 신청 건들을 주 가석방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법률이 2007년에 통과되었다. 가석방 위원회는 법률부(Department of Law), 피해자 권리 사무국 및 가정 내 폭력, 1급 방화 또는 인신침해가 수반된 범죄의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신침해 범죄에는 살인, 폭행, 성범죄 및 알래스카주 법령 표제 11, 제 41장에 설명되어 있는 그 밖의 모든 범죄가 포함된다. 이 법률(House Bill 69)은 Anchorage 하원의원 Ralph Samuels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전 주지사 Sarah Palin이 2007년 2월 22일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AS 33.20.080(a)].

법 집행 기록 열람

알래스카주의 공개 기록법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공공 기관의 공개 기록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규정에는 여러 개의 예외가 있으며, 그러한 예외 중 하나는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수집된 기록 또는 정보...”에 적용된다. 이 예외 규정의 예를 들자면, 법 집행

절차와 충돌하고, 한 개인에게서 공정한 재판 또는 공정한 선고 기회를 박탈할 것으로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정보 저작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같은 조항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AS 40.25.110(a); 12o(a) (6) 및 (a) (6) (C)].

청소년 재판 사건에서의 피해자 권리

청소년 재판 제도의 목표 중 하나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성인 범죄의 피해자와 동일한 권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AS 47.12.010(b) (12)]. 따라서,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위에 요약된 권리를 참조하도록 한다. 그러나, 청소년 재판 사건의 경우 절차와 조항들이 차이가 있다. 청소년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특별 조항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피고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은 청소년 범죄 소송 절차라고 한다 [AS 47.12]. 피고를 “미성년자”로 지칭한다[AS 47.12.020]. 사건은 기밀로 취급되나, 피해자는 해당 미성년자가 출석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출석 및 참여할 수 있다[알래스카주 헌법 제 1조 24항; AS 12.61.010(a) (1) (B), AS 47.12.110(b)].

법원은 미성년자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적절한 피해자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S 47.12.120(b) (4)].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AS 47.12.120(b) (4) (A)].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피해자 배상 명령은 피고의 보호 관찰이나 구속 기간 종료 후에도 민사상 판결 결과 확정된 채무로써 계속 집행 가능하다(성인의 법원 판결과 유사) [AS 47.12.170].

보상금 지급 액수 판정은 해당 범죄와 발생한 손실을 근거로 하되, 피고의 연령이나 법적 신분을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피해자는 성인 피고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 범죄 피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AS 18.67.101].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알래스카주 변호사 협회, 변호사 소개(Alaska Bar Association Lawyer Referral)

(907) 272-0352
1-800-770-9999
www.alaskabar.org

알래스카주 가정 폭력 대책 회의(Alaska Council on Domestic Violence)

알래스카주 공공안전부, 주 전역에 걸친 서비스 조직화, 교육, 단체에 대한 보조금

(907) 465-4356
www.dps.state.ak.us/cdvsa

알래스카주 사법 제도(Alaska Court System(Criminal Desk))

Anchorage: (907) 264-0471
Bethel: (907) 543-2298
Dillingham: (907) 842-5215
Fairbanks: (907) 452-9289
Homer: (907) 235-8171
Juneau: (907) 463-4700
Kenai: (907) 283-3110
Ketchikan: (907) 225-3195
Kotzebue: (907) 442-3208
Nome: (907) 443-5216
Palmer: (907) 746-8181
Utqiagvik: (907) 852-4800
www.courts.alaska.gov

CourtView
피고 이름 또는 사건 번호로 재판일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 정보 시스템
www.courtrecords.alaska.gov

가족법 지원 센터(Family Law Self-Help Center)
(907) 264-0851
수신자 부담(알래스카주) 1-866-279-0851
www.courts.alaska.gov/shc/family/selfhelp.htm

알래스카주 교정국(Alaska Department of Corrections)

피해 영향 진술 정보, 정보 안내, 범죄자의 석방, 이송 또는 도주 통보

피해자 지원 부서(Victim Service Unit):
(907) 269-7384; 1-877-741-0741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 (907) 269-4642
보호관찰 정보(Probation Information):
(907) 269-7367
doc.alaska.gov

등록 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의 석방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피고의 구류 위치 및 투옥 상태 확인 가능
VINE 1-800-247-9763
www.vinelink.com

알래스카주 사법 위원회(Alaska Judicial Council)

Criminal justice system(형법제도):
형법제도에 대한 소책자, 피해자 안내서

(907) 279-2526
1-888-790-2526
ajc.alaska.gov

알래스카주 법률 구조 공사(Alaska Legal Services Corporation)

저소득 알래스카주민, 고령자 및 원주민 할당(Native allotment) 지원자에 대한 주 전역에 걸친 무료 법률 지원. 가족법, 주거, 소비자, 공공 혜택, 의료 문제, 수입 유지, 학대로부터의 보호, 원주민법 및 유언장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ALSC는 주 곳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제공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법률적 자립에 관한 정보 및 추천 정보 제공:
www.alaskalawhelp.org

Anchorage: (907) 272-9431, 1-888-478-2572
Bethel: (907) 543-2237, 1-800-478-2230
Dillingham: (907) 842-1452, 1-888-391-1475
Fairbanks: (907) 452-5181, 1-800-478-5401
Juneau: (907) 586-6425, 1-800-789-6426
Kenai: (907) 953-7608
Ketchikan: (907) 225-6420
Kotzebue: (907) 442-3500, 1-877-622-9797
Nome: (907) 443-2230, 1-888-495-6663
www.alsc-law.org

알래스카주 원주민 사법 센터(Alaska Native Justice Center)

(907) 793-3550
www.anjc.net

알래스카주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 네트워크(Alaska Network on Domestic Violence & Sexual Assault, ANDVSA)

가정 내 폭력/성폭력: 피해자 변호,
공개 정보, 교육 및 기술 지원

Juneau: (907) 586-3650
Sitka: (907) 747-7545

법률 정보 안내 핫라인(화요일
오후 5-7시만 이용 가능):
1-888-988-3725
www.andvsa.org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Alaska Office of Victims' Rights)

범죄 피해자 변호 및 사법 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907) 754-3460; 1-844-754-3460
www.ovr.akleg.gov;
officeofvictimsrights@akleg.gov

알래스카 이민 정의 프로젝트(Alaska Immigration Justice Project)

알래스카 이민 정의 프로젝트는 비영리 기관으로,
시민권, 영주권, 취업 허가증, 망명, 가족 초청 이민,
그리고 이민자 중 가정 내 폭력, 성폭력 및 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이민 청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이민 신청에 대해,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적당한 비용으로 이민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

(907) 279-2457 (AIJP)
www.akiip.org

가톨릭 사회 단체 이민 및 난민 프로젝트(Catholic Social Services Immigration & Refugee Project)

가정 내 폭력, 이혼 및 형사 소송
절차로 인한 이민 문제

(907) 222-7300
www.cssalaska.org/our-programs/refugee-assistance-immigration-services

검찰청(District Attorney Offices)

형사 소추, 피해자-증인측 조정관, 팸플릿(
성폭력, 가정 내 폭력, 스토킹, 피해자 권리

및 위험 방지 계획 관련).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면,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Anchorage: (907) 269-6300
Bethel: (907) 543-2055
Dillingham: (907) 842-2482
Fairbanks: (907) 451-5970
Juneau: (907) 465-3620
Kenai: (907) 283-3131
Ketchikan: (907) 225-6128
Kodiak: (907) 486-5744
Kotzebue: (907) 442-3396
Nome: (907) 443-2296
Palmer: (907) 761-5648
Sitka: (907) 747-5851
Utiqagvik (907) 852-8130

주 전체 피해자/증인측 조정관: (907) 269-5261
www.law.alaska.gov/departments/about.html#dao

전국 가정 내 폭력 상담 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가정 내 폭력: 위기 개입, 정보 안내,
전화 통역 및 번역된 자료 제공

1-800-799-SAFE (7233),
1-800-787-3224 (TTY)
www.ndvh.org

아동 복지부(Office of Children's Services)

(907) 269-4000
아동 학대 신고: 1-800-478-4444
부모 상담: 1-800-643-KIDS (5437)
dhss.alaska.gov/ocs

공익 옹호관 사무소(Office of Public Advocacy)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거나 몇 가지
이유로 국선 변호인 단체(Public Defender
Agency)의 변호를 받을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법원에서 정한 변호인 제공

Anchorage: (907) 269-3500
Bethel: (907) 543-1234
Fairbanks: (907) 451-5933
Juneau: (907) 465-4173
Palmer: (907) 745-0435
www.doa.alaska.gov/opa

국선 변호사 사무소(Public Defender Offices)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형사
피고를 위해 국선 변호사 지원

Anchorage: (907) 334-4400; 1-800-478-4404
Bethel: (907) 543-2488; 1-800-478-2389
Dillingham: (907) 842-4582; 1-800-478-4582
Fairbanks: (907) 458-6800; 1-800-478-1621
Juneau: (907) 465-4911; 1-800-478-4910
Kenai: (907) 283-3129; 1-800-478-3129
Ketchikan: (907) 228-8950; 1-800-478-6189
Kodiak: (907) 486-8114; 1-800-478-8113
Kotzebue: (907) 442-3736; 1-800-178-3738
Nome: (907) 443-2271; 1-800-478-2279
Palmer: (907) 761-5698; 1-800-478-5661
Sitka: (907) 747-6808; 1-800-478-6809
Utgavik: (907) 852-2520; 1-800-478-2521
www.doa.alaska.gov/pda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Victims for Justice)

강력 범죄: 살인 및 폭행 생존자를 위한 변호, 범죄
피해로 인한 실의 극복 지원, 위기 개입, 지원

(907) 278-0977; 1-888-835-1213
www.victimsforjustice.org

VINE (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범죄자의 석방, 이송 또는 도주에 대한 자동 통보

1-800-247-9763
www.vinelink.com

알래스카주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보상

(907) 465-3040; 1-800-764-3040
www.doa.alaska.gov/vccb/

지역별 위기 상담 센터 안내

ANCHORAGE

학대 피해 여성 지원(Abused Women's Aid in Crisis, AWAIC)

가정 내 폭력: 보호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아동 복지 서비스, 학대자 상담

업무용 전화: (907) 279-9581
비상 전화: (907) 272-0100
www.awaic.org

Alaska CARES

(907)-561-8301; 1-877-561-8301
www.providence.org/lp/ak/alaska-cares

Chugachmiut

자결 능력 증진을 위한 부족간 협력체, 임시
생필품 지원(보호시설, 음식, 의복, 매장)

(907) 562-4155; 1-800-478-4155
www.chugachmiut.org

Fort Richardson 커뮤니티 서비스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Fort Richardson Community Services and Family Advocacy Program)

(907) 580-5358
24시간 성폭력 상담 전화: (907) 384-7272
www.jber.jb.mil/Services-Resources/JBER-Connect-Resources

앵커리지 지자체, 보건복지 서비스(Municipality of Anchorage, Health and Human Services)

대인 폭력 예방 조정관: (907) 343-6589
가정 내 폭력 예방: (907) 343-6302

알래스카의 새 희망(New Hope on the Last Frontier)

가정 내 폭력에 영향을 받은 성인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함

(907) 274-2745
www.newhopeak.org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Sexual Assault Response Program, EAFB)

(907) 551-2033

STAR (Standing Together Against Rape)

성폭력/아동 성폭력: 변호, 비상 전화 운영

업무용 전화: (907) 276-7279

비상 전화: (907) 276-7273, 1-800-478-8999;

TTY (907) 278-9988

www.staralaska.com

BETHEL

마을 의회 의장 연합(Association of Village Council Presidents, Inc., AVCP)

사회 복지 서비스(Social Services) 부문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기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 일반적인 지원, 에너지 지원, 고령자 지원 및 변호.

(907) 543-7472; 1-800-478-3521

www.avcp.org

툰드라 여성 연합(Tundra Women's Coalition)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지역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543-3444

비상 전화: (907) 543-3456, 1-800-478-7799

www.tundrapeace.org

Yukon-Kuskokwim 보건 협회(Yukon-Kuskokwim Health Corporation)

YKHC Behavioral Health Services에서는 Yukon-Kuskokwim Delta 지역민들을 위한 전체론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문화에 기반한 일련의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

행동 건강 관리: (907) 543-6110

긴급 서비스:

(907) 543-6100; 1-800-478-2642

www.ykhc.org

CORDOVA

Cordova 가족 지원 센터(Cordova Family Resource Center)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비상 전화, 변호, 도서관, 공교육 지원

업무용 전화: (907) 424-5674

24시간 비상 전화:

(907) 424-HELP (4357); 1-866-790-4357

www.cordovafamilyresourcecenter.org

DILLINGHAM

SAFE (Safe and Fear-Free Environment)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비상 전화, 지역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마을 안전 가옥, Bristol Bay Native Association과 협력

업무용 전화: (907) 842-2320

비상 전화: 1-800-478-2316

www.safebristolbay.org

EMMONAK

Emmonak 여성 쉼터(Emmonak Women's Shelter)

가정 내 폭력 보호 시설, 위기 개입

(907) 949-1434

www.emmonakshelter.org

FAIRBANKS

폭력 없는 삶을 위한 알래스카 내륙 지역 센터(Interior Alaska Center for Non-Violent Living, IAC)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변호, 상담, 비상 전화, 노인 학대, 아동 복지 서비스, 지역 봉사 활동

24시간 지원: (907) 452-2293,

1-800-478-7273

www.iacnvl.org

Tanana 족장 회의(Tanana Chiefs Conference)

가정 내 폭력: 예방, 변호, 정보 안내, 마을 봉사 활동

(907) 452-8251; 1-800-478-6822

수신자 부담 전화(알래스카 외부):
1-800-770-8251
www.tananachiefs.org

HOMER

사우스 페닌슐라 헤이븐 하우스 (South Peninsula Haven Hous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협력 단체,
변호, 비상 전화, 교육,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235-7712
24시간 비상 전화:
(907) 235-8943; 1-800-478-7712
www.havenhousealaska.org

JUNEAU

학대 및 강간 위급 여성 지원(Aiding Women from Abuse and Rape Emergencies, AWAR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노인 학대, 아동 복지 서비스,
지역 봉사 활동, 아동 성학대 상담

업무용 전화: (907) 586-6623
비상 전화: (907) 586-1090, 1-800-478-1090
www.awareak.org

KENAI / SOLDOTNA

리쇼어 센터(The Leeshore Center)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지원, 변호, 비상
전화, 노인 학대, 아동 복지 서비스, 임시 생활 센터
(transitional living center), 남성 재교육 프로그램

업무용 전화: (907) 283-9479
24시간 비상 전화: (907) 283-7257
leeshoreak.org

KETCHIKAN

Ketchikan 인디언 커뮤니티 (Ketchikan Indian Community)

사회 복지 서비스(Social Services) 부문에서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자 중재 프로그램 제공.

업무용 전화: (907) 228-4917
www.kictribe.org

WISH (Women in Safe Homes)

가정 내 폭력, 성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종합적인 개입과 예방, 봉사 활동 및 교육.

(907) 247-WISH (9474), 1-800-478-9474
www.wishak.org

KODIAK

Kodiak 여성 자원 및 위기 센터(Kodiak Women's Resource & Crisis Center)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486-6171
비상 전화: (907) 486-3625
www.kwrcc.org

KOTZEBUE

Maniilaq 가족 위기 센터(Maniilaq Family Crisis Center)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빌리지 애드버킷(village advocate)

(907) 442-3724, 1-888-478-3312
www.maniilaq.org

MAT-SU VALLEY

알래스카 가족 서비스(Alaska Family Servic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376-4080
24시간 비상 전화:
(907) 746-8026, 1-866-746-4080
www.akafs.org

NOME

베링 해 여성 그룹(Bering Sea Women's Group)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상담, 변호,
지역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907) 443-549; 1-800-570-5444
beringseawomensgroup.org

SEWARD

Seaview 커뮤니티 서비스(Seaview Community Services)

가정 내 폭력/성폭력: 안전 가옥,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운영

업무용 전화: (907) 224-5257
비상 전화: (907) 224-3027
www.seaviewseward.org

UTQIAGVIK

위기의 극지 여성 지원 센터 (Arctic Women in Crisis)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지역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852-0261
비상 전화: (907) 852-0274, 1-800-478-0267

SITKA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SITKA 사람들의 모임(Sitkans Against Family Violenc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지방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747-3370
비상 전화: (907) 747-6511, 1-800-478-6511
www.safv.org

VALDEZ

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Advocates for Victims of Violenc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지역 봉사 활동,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용 전화: (907) 835-2980
비상 전화: (907) 835-2999, 1-800-835-4044
www.avvalaska.org

UNALASKA

성폭력 및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UNALASKA 사람들의 모임(Unalaskans Against Sexual Assault & Family Violence)

가정 내 폭력/성폭력 보호 시설, 상담, 변호, 비상 전화

비상 전화: (907) 581-1500; 1-800-478-7238
www.usafvshelter.org



“본 기획은 미 법무부 산하 여성 폭력 방지국(Office of Violence Against Women)의 재정 지원을 통해 후원됩니다. 본 문서의 견해는 문서 작성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미 법무부(DOJ)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